



‘온돌, 중·일에 뺏길라~’ 기술표준 제정 시공 실명제도 도입, 부실공사 차단책도 추진중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온돌(ondol)’을 ‘한국의 대표적인 바닥난방장치(floor-heating device)’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여년 전인 1768년에 최초로 출간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에 온돌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문화관광부에서도 한국 100대 전통문화 중 하나로 온돌을 지정했다. 그런데도 온돌의 종주국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국회와 관련 산업계가 중심이 돼 전 세계적인 기술

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돌을 활용한 바닥난방장치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벤치마킹에 열심인데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온돌과 관련한 기술표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이미경의원(열린우리당 서울 은평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8월 31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온돌과 난방설비가 안



박기준 회장(오른쪽)은 중국 난방위원회측이 온돌 설치기준 자료를 요구해 곤혹을 치렀다. 90년대 관련법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중국 난방위원회의 방한장면.

전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에서는 '온수온돌 및 구들온돌의 구조와 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만 하면 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건축법령에 엄연히 존재하던 온돌시공기준이 규제완화추세에 밀려 폐지된 이후 이미경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제 표준화의 시급성이 될 수 있는 온돌시공 기준 마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온돌 난방을 시공한 실적은 2000년 35건에서 지난해에는 7360건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베이징시 팡산구에 위치한 80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중 3000 가구에 온돌을 시공했다

런나이코리아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에 한국식 온돌난방을 표준 사양으로 적용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

난방기능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온돌은 하지만 제대로 된 국내 표준 기준조차 없다.

온돌의 종주국에 온돌이나 난방 설치의 표준기준이 없으니 가뜰이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먼저 선수를 칠 판이다.

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은 올해초 온돌난방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중국난방위원회측이 국내 설치기준자료를 요청해 곤혹을 치렀다.

온돌 난방의 종주국인 한국의 시공 관련 법령 체계를 참고해 중국 관련 법령을 법제화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정작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온돌 난방 시공과 관련한 표준 기준이 1990년대에 폐지돼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의원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온돌이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떤 명칭

온돌을 활용한 비덕난방장치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벤치마킹에 열심인데 정작 중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온돌과 관련한 기술표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으로 바뀔지 모른다”며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김치’가 일본에 건너가 ‘기무치’가 됐고 세계 시장에서 김치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고 있으니 온돌 역시 일본식 명칭으로 바뀌어 중주국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

박기준 회장은 “얼마전 독일에서 열린 온돌학회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인이 강연자로 초청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표준기준을 제정하고 국제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온돌 시공과정은 새로 신설되는 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용자의 안전이나 방화 같은 위협이 최소화되고 국제 표준화 기준 작업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열관리시공협회 신현석 회장은 “온돌난방시공과 관련한 표준 기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얻기도 어렵고 온돌 난방을 벤치마킹하는 중국 등에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또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가스안전공사, 난방설비 제조업체, 시공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온돌의 구조나 재료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실명제도 추진

개정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시공사업

자 실명제를 도입한 대목이다.

온돌과 난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시공한 사업자는 시공자의 상호와 성명, 연락처 및 시공내역 등을 설치명세서에 기재해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때 설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해 무등록 시공사업자들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열관리시공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0만여명의 시공업자가 활동중인데 이중 6만명 정도가 법적 절차를 밟은 정식 등록업자이고 4만명 정도는 무등록 사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무등록 시공업자들은 출혈 경쟁을 부추겨 시공가격을 터무니 없이 떨어뜨리는데다 하자 보수 등이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실 시공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세금 탈루로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열관리시공협회 신현석 회장은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무등록 시공업자들 때문에 정상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사 실명제가 도입되면 시공의 품질과 회원사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일러설비협회의 박기준 회장도 “건축물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는 물론 정화조까지 완공필증이 필요한데 유독 난방시공은 제외되어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돌도 韓 브랜드, 표준화로 세계 주도해야



- 온돌 표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 의원께서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한(韓)브랜드(한국어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등 6개 분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육성되는 국가 브랜드)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온돌은 우리 고유의 난방방식으로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한민족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표준 설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국정 활동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돌아 보면서 이들 국가들이 온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지만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선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온돌과 난방설비의 설치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해당 산업에서 국제 특허를 등록하는 작업이 뒤따른다면 명실상부한 온돌 난방문화 종주국으로서 수출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온돌과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예상 가능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온돌의 표준시공지침을 입법화하게 되면 향후 관련 산업의 국제 표준화가 마련될 때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온돌이나 난방과 관련한 산업계에서 제품이나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를 등록할 때 국제기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게 돼 유리한 입

지를 확보할 수 있고 결국은 수출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온돌난방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 난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전문 시공인들은 제품과 기술인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

-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 사실 과거 법령에는 온돌 표준 설치 기준이 있었지만 아마도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국회 법제실 등에 확인해보니 설치 기준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어쨌든 제가 제안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시행령에서도 온돌의 표준 설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온돌 난방의 표준 설치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나중에라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 국회 차원의 신중한 고민이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건축법 개정의 취지가 너무 좋다며 호응을 해주셨습니다.